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9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926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1356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강성백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1356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1. 접수 제362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특별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¹⁾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

별지

1)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